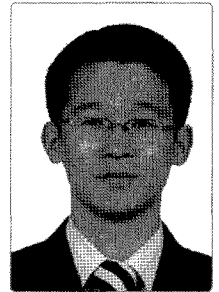


기업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이 현희 부연구위원 / 법학박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생존전략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기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혹은 타인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 큰 타격을 입거나 심지어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즉, 그 기업만이 가진 경쟁력을 잃어버림으로써 기업의 생존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로는 주로 임직원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간다가, 기술협력 단계에서의 상대방 기업에 의해서, 악의적 접근에 따른 영업비밀 탈취, 상대방 기업의 핵심인력 스카우트, 해외 진출단계 혹은 국내 라이선싱 단계에서 상대 기업에 의한 유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유출을 통해서 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보안인프라의 투자 곤란, 핵심인력의 유출 위험성,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부족, 보안업무 관련 지식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에서 영업비밀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업비밀의 개념 및 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크게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로 구별할 수 있으며, 조문에 명시된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은 그 예시로서 이해할 수 있다.¹⁾ 기술상 정보로는 성분, 처방, 제조방법, 복합방법, 제조공정, 훈련방법, 청사진, 도면, 검사방법, 시험 및 실험방법, 편집기술, 미공개된 신제품의 정보, 기계의 사양, 조리법 등을 들 수 있으며, 영업상의 정보는 고객명부, 대리점 명부, 재료의 구입처, 가격표, 입찰계획, 판매계획, 판매통계, 미발표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합병계획, 광고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영업비밀로 성립되고 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야 하며,²⁾ ‘독립된 경제적 가치

를 가지는 것’이야 하며,³⁾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 것’⁴⁾이어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당사자가 영업비밀 침해인지를 다투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중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도 비밀관리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기업에서의 영업비밀의 관리

영업비밀은 서류, 도면, 사진,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 및 DVD 등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통해서 저장 가능할 것인데, 영업비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매체에 접근이 허용된 자 이외의 자에게는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장치(자물쇠나 금고 등의 사용이나 제한구역의 설정)를 한다든지, 매체에 다른 정보와 구별되는 표시 즉, 대외비, 비밀, 1급비밀 등의 표시를 한다든지, 접근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누설에 따른 추적이나 경보시스템을 두는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보호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보관 책임 체계를 두어 관리를 함으로써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⁵⁾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 및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장비들이 발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도 요구된다. 이에 기업들은 휴대전화나 카메라가 부착된 장비에서 카메라를 소거한다거나, USB 등 저장장치의 통제, 컴퓨터의 패스워드 및 HDD의 회수 혹은 파기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을 매체에 대한 접근통제 이외에도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종업원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⁶⁾ 즉,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다든지, 근로계약시에 일정한 규정을 두어 취직 혹은 퇴직시에 의무사항을 고지하고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⁷⁾ 그리고 영업비밀은 내부인에 의한 누설뿐만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탐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과 관련이 없는

1)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11정판, 세창출판사, 2010, p. 539.

2) 이러한 비공지성은 절대적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적 비밀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윤선희, 지적재산권법 11정판, 세창출판사, 2010, p. 540)

3)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서 상대 경쟁자에 대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할 경우 당해 정보는 경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실패한 실험 데이터라 할지라도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윤선희, 지적재산권법 11정판, 세창출판사, 2010, p. 541)

4) 영업비밀은 유체물에 대한 점유나 등기·등록과 같은 공시의 방법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요한다.(윤선희, 지적재산권법 11정판, 세창출판사, 2010, p. 542)

5) 부정경쟁방지법, 사법연수원, 2010, p. 87.

6) 종업원은 취업규칙에 의한 정규사원(임직원)뿐만 아니라 시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사원, 계약사원, 촉탁사원, 출장사원, 파견사원 기타 청부계약 등에 의한 특수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황의창·황광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5정판, 세창출판사, 2009, p. 291)

7) 부정경쟁방지법, 사법연수원, 2010, p. 87.

자라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람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기업의 영업비밀이 빠져나오는 것에 신경쓰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직원을 영입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영업비밀 의무와 관련된 부분을 신경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또한, 기업 내에서의 영업비밀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기업을 떠나 다른 기업과의 관계에서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 즉,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일부를 다른 업체에 의뢰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경우, 판매점 대리계약 혹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품의 정보가 든 자료를 상대방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유출이 가능하다.⁸⁾ 뿐만 아니라 계약관계 혹은 신뢰관계에 있는 기업이 영업비밀 관리를 제대로 하

지 못한 경우,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영업비밀이 의도하지 않게 유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업 내부의 영업비밀 관리 이외에도 다른 기업과의 관계에서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노력을 보이는 경우 영업비밀 관리성을 인정받기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영업비밀 관리 노력에 덧붙여 고충처리 센터의 운영, 영업비밀 신고제 및 보상제의 도입,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영업비밀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매뉴얼 작성 등 다양한 형태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⁹⁾

영업비밀 관리의 정도

영업비밀의 관리는 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단일기준으로서 기준이 높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고, 기준이 낮은 경우에는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져서 종업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여타 기본권들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¹⁰⁾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영업비밀로 유지된다고 함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¹¹⁾ 즉, 비밀 관리의사를 가지고 영업비밀 보관장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자료의 보관·파기방법을 지정하거나,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관리하고 있다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 만약 직원이면 누구라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정보를 두어서 수 년간 회사에 근무한 자이면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비밀유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¹²⁾

초창기 판례에서는 영업비밀 준수 서약을 하는 경우에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가 있으나,¹³⁾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을 한 것만으로는 영업비밀을 적절히 관리하였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

8) 부정경쟁방지법, 사법연수원, 2010, p. 87.

9) 황의창·황광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5정판, 세창출판사, 2009, pp. 301~302.

10) 영업비밀의 관리는 기업의 규모나 사정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여 영업비밀을 관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의 여부에 따라 비밀관리노력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부정경쟁방지법, 사법연수원, 2010, pp. 86~87).

1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도3436 판결, 법원 2010.7.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12) 부정경쟁방지법, 사법연수원, 2010, p. 86.

1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에서 피고 이동섭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때 원고 회사의 업무상 기밀 등을 누설하지 않기로 서약하였던 점, 퇴직 후 회사의 기밀 및 영업방침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의 규정, 이 사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로서의 성질과 그 경제적 가치 및 원고 회사와 피고 이동섭 사이의 이익교량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 이동섭은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상당 기간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에서 류광희는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노대일, 박종국, 김길주는 신청인 회사의 핵심 직원 및 기술자로서 신청인 회사에 입사할 때에 위와 같은 서약을 하였고,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으므로, 신청인 회사와 위 신청외인들의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외인들은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신청인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상당 기간 위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435 판결에서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피피아이에 입사할 때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반적인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피아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업무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연구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사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부 네트워크망을 통한 접근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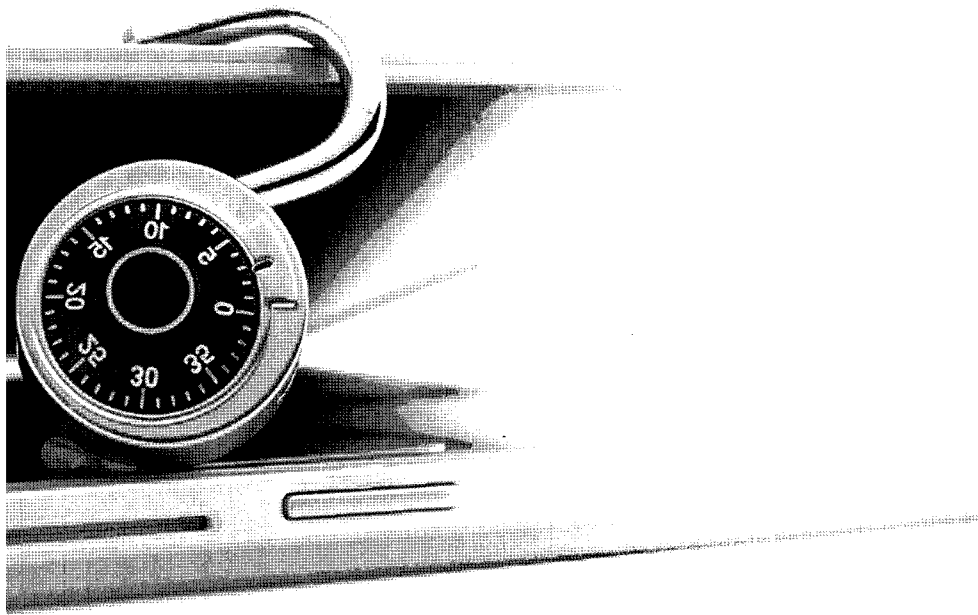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도3436 판결 사건에서도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퇴직 전날인 2005. 7. 14.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사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제반 정보 및 자료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는 피해회사의 직원인 공소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컴퓨터는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지 위 컴퓨터를 켜고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 또한 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피해회사 내의 다른 컴퓨터를 통

해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입력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쉽게 공소외인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 사건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 공소외인은 이 사건 자료를 정기적으로 CD에 백업하여 사무실 내 서랍에 보관해 두었는데, 공소외인이 그 서랍을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백업CD를 이용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일반적인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0.7.15. 선고 2008도9066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할 때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1의 경우 퇴사할 때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제품의 소스코드 등 기업비밀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사무실 외로 반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주식회사가 프로그램파일의 비밀을 유지함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중요도에 따라 프로그램파일을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던 점, 연구원들은 회사의 파일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서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기업이 일반적인 형태의 영업비밀 유지의무조항을 두고 이에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영업비밀 유지에 대한 기본적인 근로계약과 사내규정을 두는 것과 함께 이러한 영업비밀이 적절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다.

14)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피피아이(이하 '피피아이'라 한다)로부터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취득·사용하였다고 기소된 이 사건 파일 중 평통신수동소자인 스플리터와 AWG 관련 파일은 기존에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이 포함된 것이라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이 사건 파일 중 트리플렉서와 관련된 파일은 피피아이에서 연구 또는 생산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파일 중 나머지 부분 역시 이미 공개된 보고서 또는 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구성하는 내용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같이 고려하였다.



마치며

영업비밀이 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영업비밀은 1991년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포함되었고, 1998년 법명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현행법명과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으며, 이후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처벌대상 및 형량의 상향조정 등 여러 측면에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영업비밀은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과 함께 영업비밀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최근 영업비밀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도 자주 열리고 있으며, 연구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영업비밀보호법을 관장하고 있는 특허청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업비밀보호법의 법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위해 ‘영업비밀보호 제도개선 협의

회’를 운영, 영업비밀에 대한 교육, 상담업무, 세미나 개최, 팸플릿의 제작, 온라인 교육콘텐츠의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⁵⁾ 뿐만아니라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¹⁶⁾’를 2010년 11월에 오픈하여 제공함으로써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기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수준의 영업비밀 관리를 적절히 한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2011. 6 |

15) 협의회 운영, 교육 및 상담, 세미나 개최 등 제도개선,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업무는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16) 원본증명서비스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영업비밀의 특성을 살리면서 비밀리에 공신력 있는 영업비밀 보유 증거를 확보하고, 영업비밀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Hash 값)만을 외부에 노출함으로써 영업비밀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http://www.tradesecret.or.kr>(2011년 5월 9일 방문))